

특성화사업단 운영 규정

제 1 조 (목적) [특성화사업단] 분야별로 다양한 전공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특성화된 연구사업단 운영을 통한 대형 연구집단을 육성함으로써 대학의 연구역량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방법) ① 대학 내 다양한 전공, 학제간 연구형태로 특성화된 연구집단을 구성한다.

②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규모의 사업단을 선정하여 대학에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1년에서 2년까지 지원한다.

③ 예산 지원규모는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워크샵, 정보수집 및 조교인건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집행과 정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비관리세칙에 따른다.

④ 각 특성화사업단은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1~2년 내에 외부 대형연구과제나 연구센터의 유치를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⑤ 일정 규모의 외부사업을 유치하여 대학에서 대응자금이 지원되면 사업목적에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사업은 종료된다.

제 3 조 (주요업무) 특성화사업단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사업 유치를 위한 대외 활동
2. 외부 대형연구사업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
3. 관련 사업의 외부 전문가초청 workshop
4. 관련 분야 연구정보 수집과 연구계획 수립
5. 기타 연구진흥을 위한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 4 조 (선정평가) ① 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모집하며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② 사업단은 매년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예산 지원규모와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외부연구비 유치실적과 가능성 및 대학의 특성화 분야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제 5 조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 ① 본 위원회는 특성화사업단의 선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분야별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 형식으로 위촉하여 선정과 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6 조 (결과보고와 정산) 결과보고와 정산은 교내 연구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성화 사업단 운영계획서(4-5페이지)

1. 사업목적과 주요내용

① 사업목적

정부/기업 등의 ○○○사업 등을 ○○○유치함을 목적으로 함 등의 사업유치계획 기술
(연구비 예산/ /)

② 주요내용

2. 추진방법과 체계(참여인력 : 교수, 대학원생 등)

① 참여인력(교수, 대학원생 등)

② 추진체계 및 일정

3. 기대효과

외부연구비유치/연구시설 확보 등

4. 예산내역(예산서 작성은 교내학술연구비와 동일)

소요예산 산정기준